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 배경과 의의】



공정거래위원회
임영철 하도급국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 하도급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와 면제방안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주요개정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이란 하도급법령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해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협력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 적극 유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및 자금난 가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거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업체에 대해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업체는 이미 시행 중인 벌점감점제도(현금성 결제비율이 60~80% 미만은 1점, 80% 이상은 2점 감점) 및 과징금 감면제도(현금성 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50% 감면) 외에도 현장직권조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같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현금성 결제에 포함되도록 지침에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현금, 수표, 내국 신용장에 대한 환어음,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이 있게 된다.

■ 하도급지급보증 면제기준 강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급보증 면제기준을 종전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급"에서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원리금 지급능력이 우수) 이상"인 경우로 하도급법시행령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침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하였다.

우선 공제조합에 의한 신용평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하는 대신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회사채 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서 지급보증이 면제되었다가 그 후 원사업자의 회사채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지급보증이 면제된 원사업자가 면제 당시 체결하였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되, 추가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면제하였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발행하는 회사채 중 평가대상은 원칙적으로 무보증 회사채를 기준으로 하고, 회사채 등급은 당해 신용평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의무를 지되, 예외적으로 보증없이도 충분히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보증을 면제하는 지급보증 면제제도의 취지와 하도급법이 강행법규임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면제기준을 보다 구체화·객관화하여 하도급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원·수급사업자간의 협력 증진을 통한 공사품질 제고와 부실공사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공공발주 전자입찰 촉진방안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부응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발주에 있어서 전자입찰 촉진방안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분야에 대한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건설 및 제조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점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즉, 하도급법 위반사건을 조차함에 있어서 당해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개시일)의 직전 사업년도의 전자입찰비율(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은 과거 3년 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벌점 1점을 감점하고, 80% 이상은 벌점 2점을 감점하는 것이다. 모든 입찰과정이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사전예방과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경쟁제한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규제에만 의존하는 경쟁정책에서 벗어나 경쟁제한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단계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1점 감점한다. 도입단계는 사업자가 ① 최고경영자의 의지 천명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이사회 선임 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④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⑤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⑥ 하도급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의 마련 ⑦ 문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7대 핵심요소를 갖추고 이를 공시한 단계이다.

2단계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 경우에는 2점을 감점한다.

운용단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가 문서 등으로 전 직원에게 전달될 것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활동계획 및 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할 것 ③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할 것 ④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3시간 이상)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쟁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하여 시행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제로 작동되고 있음이 근거자료에 입증된 경우를 말한다.

■ 내국신용장 개설 예외 인정사유 명확화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 위탁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내국신용장 개설 예외 인정사유를 명확화 하였다.

즉, 수출물품의 제조 위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매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야 하는 원사업자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하도급법상 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 부여 시 직권조사계획 발표일을 기간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조사목적, 기업의 부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기간산정의 기준을 직권조사계획 발표일에서 직권조사 개시일로 변경하였다.